

감사위원회규정

2026. 03. 26.

IPARK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감사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회의시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다.

⑨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한다.

⑩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⑫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11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 각자는 독립적인 이사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독립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간섭도 받아서는 안된다.

③ 감사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재무 및 회계 실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한 명은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④ 사임·사망 등 사유로 인해 독립이사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해임) 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①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감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며, 위원장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7조 (종류) ① 감사위원회는 정기 감사위원회와 임시 감사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 감사위원회는 각 분기별로 1회 날을 정하여 본사에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제11조의 부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 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소집권자)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위원장은 즉시 감사위원회를 소집한다.

제9조 (소집절차) ① 감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 (결의방법) ①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상법 제393조의2 제4항에 따라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부의사항) ①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상법 제412조의2 소정의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

나. 감사록의 작성

다. 자회사의 조사에 관한 사항

라. 전문가의 조력에 관한 사항

마.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

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아.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 평가

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차.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카.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타.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 승인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시 이에 따른 안건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3. 계열회사간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단, 다음 각 목의 내용 중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도 해당하는 내부거래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근거한 내부거래

나.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근거한 내부거래

4.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제12조 (의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의사록의 사본은 회의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무)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회사의 기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감사의 유형)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정보기술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3 (감사의 실시) ①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회에게 요구한다.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거래기록의 신뢰성
2.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3.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
4.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및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
5. 회계방침의 계속성
6.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④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13조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5 (중요 회의에의 출석)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 (전문가의 조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및 간사조직) ① 감사위원회의 간사는 이사회 부속실내 전담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의2 (감사부설기구)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를 둔다. 다만,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와 직원(이하 ‘내부감사인력’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의 인력을 내부감사인력으로 간주한다.

③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이사·이사와 경영진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